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2002. 1. 1기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권이 부여 되었으며, 2003. 1. 1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청구 신청시 보상금 지급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설치 및 관리

-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재원의 조성

-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수준
-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용도

-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 경비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함

4. 참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헌법불합치 판결(2000. 7. 1)보상 입법을 기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 2002. 1. 1기준 매수청구대상 사유대지인 도로, 공원, 학교, 광장, 주차장, 시장등 1,870필지 196천㎡(59천평)이 매수청구 신청시 684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독립계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재원확보대책 및 보상금 지급등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이 행정자치부의 조례안 준칙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도시의 인구변동, 도로망, 거주환경 등을 감안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재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행위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침해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임.